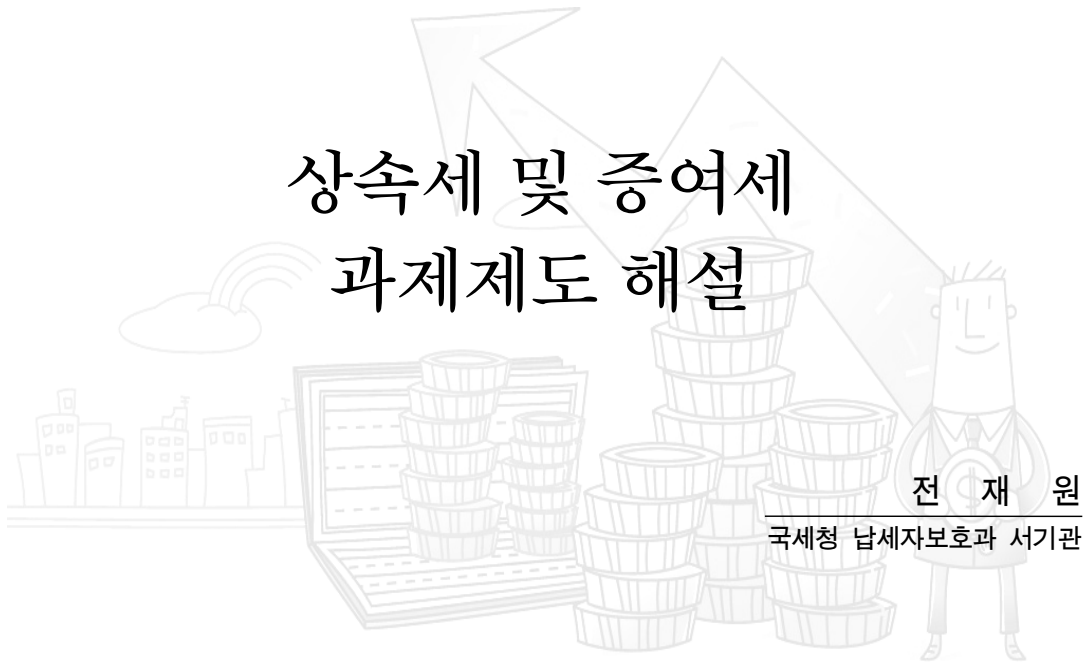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



I. 머리말

이번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2004년부터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한다.

II.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라함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말하고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된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3조)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2.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가.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2)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상속인	법정상속	
		상속분	배분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2/5
		배우자 1.5	3/5
	장남·장녀(미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2/7
		장녀 1	2/7
		배우자 1.5	3/7
		배우자 1.5	3/7
	장남·장녀(출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2/11
		장녀 1	2/11
		2남 1	2/11
		2녀 1	2/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배우자 1.5	3/11
		부 1	2/7
모 1		2/7	
		배우자 1.5	3/7

Ⅲ.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에는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추정·간주상속재산도 포함된다.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2.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다.

- ①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②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③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 ④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한 재산가액

3. 추정·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 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위 ①, ②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 미소명금액-[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

-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④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 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IV. 상속세 비과세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①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 ③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 ④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 2억원)

V.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상속재산가액 - ②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공과금·채무 등 - ③ 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گران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및 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①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② 주택외의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

가.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장례비용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다. 채 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가. 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 등)이 상속받는 경우[가업상속재산×20%(30억원 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2) 영농상속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나.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한다.

- 1) 상속재산의 가액 = 총상속재산-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 대상 증여재산-비과세·불산입 상속재산(공익법인출연, 공익신탁재산)-공과금·채무
- 2)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 등기를 하고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 3)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다. 기타 인적공제

1) 자녀공제

- ① 자녀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 ②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다.

2) 미성년자 공제

- 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②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3) 연로자 공제

- 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②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4) 장애인 공제

- ①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②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라.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마.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금전신탁·보험금·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만원 이하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바. 상속세 계산사례

1) 상속재산의 가액 등 사례

- ① 상속재산 : 주택 2억 8천만원, 토지 10억 5천만원, 합계 13억 3천만원, 채무 1,500만원
- ② 증빙서류 있는 장례비용 300만원, 각종 공과금 2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23세와 18세) 있는 경우
- 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2) 계산내용

- ① 상속과세가액 : 13억 800만원
(계산) 상속재산 13억 3,000만원- 채무 1,500만원 - 장례비용 500만원(최소 500만원) - 공과금 200만원
- ② 기초공제 : 2억원
- ③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 ④ 기타 인적공제
 - ㉠ 자녀공제 : 6,000만원(자녀 1인당 3,000만원)
 - ㉡ 미성년자 공제 : 1,000만원(연간 500만원×18세 자녀의 20세까지 기간 2년)
- ⑤ 일괄공제 : 5억원(②+④ 대신 적용 가능함)
- ⑥ 과세표준 : 3억 800만원(①-③-⑤선택, 일괄공제 유리)
- ⑦ 산출세액 : 5,160만원(3억 800만원×세율20% -누진공제 1,000만원)
- ⑧ 납부할 상속세액 : 4,644만원(자진신고시 ⑦의 10% 공제)

VI.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1.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2.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다.

가. 분납

-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㉓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나. 연부연납

-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 ②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한다.
다만, 기업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 중 기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한다.
- ③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연부연납가산금)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물납

- 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 ②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납할 수 있다.
- ③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물납할 수 있는 재산
 - ㉓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㉔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수익증권
 다만, 상장주식은 제외함

3. 신고시 제출할 서류 등

- ①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②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 ③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④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⑤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 서류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 ㉠ 토지의 경우 : 등기부 등본, 토지가격확인원
- ㉡ 건물의 경우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 ㉢ 예금의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Ⅶ. 증여세 과세대상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가.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예시적 규정

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한정하여 과세되는 경우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44)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37)
- ③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부 받은 경우(§41의 4)
- ④ 결손·휴업·폐업 법인의 주주 등이 재산 또는 주주 등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41)

- ⑤ 기업의 합병 또는 증자·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38, §39, §39의 2)
- ⑥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40)
- ⑦ 유·무상 취득한 주식이 취득후 5년 이내 상장됨으로써 얻은 이익(§41의 3)
- ⑧ 유·무상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후 5년 이내 다른 상장법인과 합병됨으로써 얻은 이익(§41의 5)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및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 ⑨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도 과세되는 경우

- ① 다른 사람의 재산신탁으로 재산신탁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을 받은 경우(§33)
- ②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 및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을 증여받아 불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34)
- ③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채무를 대신 갚아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36)
- ④ 기업의 증자시 저가로 실권주를 재배정받거나 제3자가 직접 배정받은 경우(§39)

다. 기 타

- ①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금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45)
- ② 위에 예시된 경우 이외의 타인 재산의 무상사용 등과 법인의 자본거래 등을 통해 얻은 이익(§42)
- ③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42)
- ④ 제3자를 통해 우회하거나 거래 형식을 변형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VIII. 증여세 면세 · 비과세

1.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가. 증여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한다.

나.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5년간 1억원 한도)한다.

- ① 자경농민 :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나 이와 연결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한다.
- ② 영농자녀 :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 ③ 농지 등의 범위 : 농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포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6의 2)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 받았던 세금을 즉시 추징(추징시 이자 상당액 포함) 한다.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자산

가.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축될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 장애인의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③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 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③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④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3)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①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신탁해지일 부터 2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 ②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4)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IX.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공하여 계산한다.

-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1. 증여재산의 평가

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나. 시 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및 유산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한다.

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①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② 주택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증여재산 공제

가.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관 계	공제금액	비 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나.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창업자금 및 기업승계 주식 등 사전증여시 5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한다.

라. 사례

-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 ②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3.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창업자금 및 기업승계 주식 등 증여(단일 세율)	10%	-

4. 증여세 계산사례

가. 사례

아버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나. 계산내용

- ① 증여재산 공제 : 3,000만원
- ② 과세표준 : 1억 2,000만원(1억 5천만원 - 3,000만원)
- ③ 산출세액 : 1,400만원[(1억 2,000만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④ 납부할 세액 : 1,260만원(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X.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1.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 신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다.

가. 분납

-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 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나. 연부연납

-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 ②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한다.
- ③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연부연납가산금)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물납

- ①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 ② 유가증권중 비상장주식 등은 제외되며, 다만 다른 증여재산을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등에는 물납할 수 있다.
- ③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
 -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수익증권
다만, 상장주식은 제외함

3. 신고시 제출할 서류 등

-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② 증여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 ③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④ 기타 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토지의 경우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 ㉢ 건물의 경우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

